

제301회 임시회
2011. 6. 23(목)

심 사 보 고 서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 / 1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1. 6. 23(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1년 6월 3일
-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8일
- 라. 상정일자 : 2011년 6월 16일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윤영현)

가. 제안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금력과 인프라가 취약한 R&D중심의 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를 신축하고,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자료에 따른 사업계획 중 주요시설 건립부지로 우리도가 확보해야할 토지를 취득하며,
- 북부지역 거주 도민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출범한 북부출장소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제천시 소재 도 산하기관의 통합청사로 활용을 위한 북부출장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신축》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61번지 (18,645m²)
- 사업규모 : 지하 2/지상 8층, 19,538m²
- 사업기간 : 2011. 7 ~ 2013. 6
- 주요시설 : 벤처연구시설 4,500m², 공동장비시설 1,000m², 회의실 1,490m², 게스트하우스 1,080m², 업무시설 900m², 근린생활시설 2,325m², 운동시설 300m², 공용면적 7,943m²
- 사 업 비 : 36,142백만원(도비 100%)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 건립부지 취득》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28-1번지 일원
- 취득대상 : 토지, 7필지

(단위:m², 원)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계			107,753.1	16,753,990,720	
1	청원 강외 연제 650	장	10,247.7	1,593,363,630	
2	청원 강외 연제 651	장	12,494.9	1,942,769,520	
3	청원 강외 연제 652	장	9,745.5	1,515,279,060	
4	청원 강외 연제 653	장	17,243.7	2,681,136,690	
5	청원 강외 연제 654	장	17,241.0	2,680,716,880	
6	청원 강외 연제 655	장	19,595.1	3,046,744,120	
7	청원 강외 연제 659	장	21,185.2	3,293,980,820	

○ 사업기간 : 2011. 6 ~ 2013. 12

○ 사업비 : 16,754백만원(도비 100%)

《북부출장소 이전 신축》

○ 위치 : 제천시 신월동 1108-1(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 13,811m²)

○ 사업규모 : 지상 3층, 1,220m²

○ 사업기간 : 2011. 7 ~ 2012. 12

○ 사업비 : 3,150백만원(도비 100%)

※ 입주예정기관 : 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 가축위생연구소 제천지소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손자용)

금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정주여건과 자금력과 인프라가 취약한 R&D 중심의 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를 신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자료에 따른 사업계획 중 주요시설 건립부지로 우리도가 확보해야 할 토지를 취득하며,

북부지역 거주 도민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출범한 북부출장소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제천시 소재 도 산하기관의 통합청사로 활용을 위한 북부출장소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것임.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신축의 경우, 당초 민자유치를 전제로 계획되어, 2010년 11월 충북발전연구원에 1억 3,6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민자유치방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2011년 5월 해지하는 등 다양한 여건변화가 있었음에 따라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북부출장소 신축의 경우 신축위치가 제천시 신월동 1108-1 농산사업소 위치로 제천시내 중심가와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왕래가 불편하며, 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 가축위생연구소 제천지소 등은 사업성격상 외곽에 위치해도 불편이 없으나 북부출장소를 신축하여 외곽에 위치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 등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 184 호
----------	---------

제출연월일 : 2011년 6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금력과 인프라가 취약한 R&D중심의 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를 신축하고,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자료에 따른 사업계획 중 주요시설 건립부지로 우리도가 확보해야할 토지를 취득하며,
- 북부지역 거주 도민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출범한 북부출장소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제천시 소재 도 산하기관의 통합청사로 활용을 위한 북부출장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신축》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61번지 (18,645㎡)
- 사업규모 : 지하 2/지상 8층, 19,538㎡
- 사업기간 : 2011. 7 ~ 2013. 6
- 주요시설 : 벤처연구시설 4,500㎡, 공동장비시설 1,000㎡, 회의실 1,490㎡
게스트하우스 1,080㎡, 업무시설 900㎡, 근린생활시설 2,325㎡
운동시설 300㎡, 공용면적 7,943㎡
- 사 업 비 : 36,142백만원(도비 100%)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 건립부지 취득》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28-1번지 일원
- 취득대상 : 토지, 7필지

(단위:m², 원)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계			107,753.1	16,753,990,720	
1	청원 강외 연제 650	장	10,247.7	1,593,363,630	
2	청원 강외 연제 651	장	12,494.9	1,942,769,520	
3	청원 강외 연제 652	장	9,745.5	1,515,279,060	
4	청원 강외 연제 653	장	17,243.7	2,681,136,690	
5	청원 강외 연제 654	장	17,241.0	2,680,716,880	
6	청원 강외 연제 655	장	19,595.1	3,046,744,120	
7	청원 강외 연제 659	장	21,185.2	3,293,980,820	

- 사업기간 : 2011. 6 ~ 2013. 12
- 사 업 비 : 16,754백만원(도비 100%)

《북부출장소 이전 신축》

- 위 치 : 제천시 신월동 1108-1(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 13,811m²)
- 사업규모 : 지상 3층, 1,220m²
- 사업기간 : 2011. 7 ~ 2012. 12
- 사 업 비 : 3,150백만원(도비 100%)
- ※ 입주예정기관 : 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 가축위생연구소 제천지소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별첨

4.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4-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107,753.1	16,753,990				
	건물	2 건	20,758	39,292,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61번지	19,538.0	36,142,000	2011~ 2013	신 축		
	기타							
2	토지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60번지 등 7필지	107,753.1	16,753,990	2011~ 2013	첨북의료부합단지 주요시설 건립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제천시 신월동 1108-1번지	1,220.0	3,150,000	2011~ 2012	신 축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 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